

2021년도
본청5차[도시건축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 2021년도 본청5차[도시건축과]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1. 10. 12. ~ 10. 18.(5일간) / 2018. 10월부터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1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1건 (주의 4건, 시정 7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4건 / 4,154,01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

■ 국도19호선(영동병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

- 영동읍 설계리 683번지 일원에 예상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영동병원 귀골도로 개설공사 구간을 연결하는 접속도로 개설(2023년~2024년)과 함께 회전교차로를 설치 국도19호선과 군계획도로(영동병원~귀골)를 연결하여 접근성 향상 및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흐름 개선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1부. 끝.

주요 지적사항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총 11건	주의 4 시정 7		4건 4,154,010원
1	◦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소홀	시정		
2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부적정	주의		
3	◦ 정보공개 처리 부적정	주의		
4	◦ 공공요금 납부 소홀	시정		회수 1,400원
5	◦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정정	시정		회수 10,000원
6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업무 소홀	시정		회수 29,610원
7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사용내역 공개 소홀	시정		
8	◦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주의		
9	◦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시정		
10	◦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4,113,000원
11	◦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주의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소홀

【현 황】

○ 업무 인계·인수 전자결재 내역

연번	인계자		인수자		담당일	전자결재 여부	비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1	□□7급	A	□□7급	B	2021.04.01.	부	도시개발팀
2	□□7급	B	□□7급	C	2021.04.01.	부	도시개발팀

【위법부당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 제61조에 따라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철저[행정과-19286(2020. 9.11.)호]」 공문을 시행하여 모든 군 소속 공무원은 인사이동(조직개편, 업무분장 변동 포함)에 따른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를 이행하되, 팀장급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를 출력하여 행정과로 제출하고, 팀원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 부서장 결재하여 자체보관 토록 하였음.
- 그러나, 군수님 지시사항 이후 도시건축과 직원들의 업무 인계·인수 전자결재 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현황]과 같이 2건의 인사이동(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누락된 인계·인수를 이행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부적정

【현 황】

1. 처리 지연 내역

민원명	처리 기간	민원인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	처리자
폐가 철거 요청	7일	-	1AA-2008-0953859	20.08.26.	20.09.03.	20.09.08.	3	-

2. 처리결과 통보 부적정 내역

민원제목	민원인	신청일	신청번호	답변통보방식 (민원인요구)	시행문결재여부	비고 (처리자)
인도(보도블럭)포장	-	19.04.25.	1AA-1904-480424	서면	부[결재누락]	-
재목손괴 및 주거침입	-	19.06.25.	1AA-1906-814249	서면	부[결재누락]	-
진입도로개설	-	19.08.12.	1AA-1908-174753	서면	부[내부결재]	-
폐가정리요청	-	19.10.14.	1AA-1910-272103	서면	부[결재누락]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농경지 피해 & 복구요청	-	20.03.09.	1AA-2003-0205085	서면	부[내부결재]	-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접도로 사용에 관한 질의	-	20.03.11.	1AA-2003-0244701	서면	부[내부결재]	-
공사에 대한 피해보상	-	20.03.30.	1AA-2003-0715852	서면	부[내부결재]	-
공영주차장 인도(보도블럭) 복원 요청	-	20.06.19.	1AA-2006-0582336	서면	부[내부결재]	-
KS 규정 시험방법을 위반한 시험성적서 등에 대한 법적조치의 건(총청복도)	-	20.07.14.	1AA-2007-0398286	서면	부[내부결재]	-
폐가 철거 요청	-	20.08.11.	1AA-2008-0379144	서면	부[내부결재]	-
아파트옥상	-	20.08.20.	1AA-2008-0731468	서면	부[내부결재]	-
폐가 철거 요청	-	20.08.26.	1AA-2008-0953859	서면	부[결재누락]	-
아파트옥상계단	-	20.08.28.	1AA-2008-1033376	서면	부[내부결재]	-
영동지하차도공사 피해	-	20.11.18.	1AA-2011-0538037	서면	부[내부결재]	-
불법 건축물 양성화?	-	20.11.19.	1AA-2011-0560131	서면	부[내부결재]	-
도로사용문제건	-	20.11.22.	1AA-2011-0702931	서면	부[내부결재]	-

민원제목	민원인	신청일	신청번호	답변통보방식 (민원인요구)	시행문결재여부	비고 (처리자)
무허가 용도변경건	-	20.12.30.	1AA-2012-0912679	서면	부[내부결재]	-
단독주택 신축	-	21.02.01.	1AA-2102-0010859	서면	부[내부결재]	-
일조권및 허가도면과다른시공	-	21.03.10.	1AA-2103-0360887	서면	부[내부결재]	-
불법건축물 단속해주세요	-	21.03.31.	1AA-2103-1250091	서면	부[내부결재]	-
건축물대장 생성 등재관련 재질의 및 건의	-	21.05.24.	1AA-2105-0879772	서면	부[내부결재]	-
기존 대지안의 증축신고 및 건축물대장 생성 등재관련 재질의	-	21.05.28.	1AA-2105-1065983	서면	부[내부결재]	-
건축물대장 생성,재작성 신청	-	21.06.02.	1AA-2106-0074896	서면	부[내부결재]	-
대지안의 주택 증축(신고) 허가관련 고충민원 건의	-	21.06.04.	1AA-2106-0157925	서면	부[내부결재]	-
대지안의 농촌주택 등 무허가(무등재)건축물	-	21.06.23.	1AA-2106-0900811	서면	부[내부결재]	-
무허가건축물 조치	-	21.07.05.	1AA-2107-0195829	서면	부[내부결재]	-
무허가 슬레이트 지붕	-	21.07.16.	1AA-2107-0758819	서면	부[내부결재]	-

【위법부당사항】

-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법정민원을 제외한 질의, 건의, 기타, 고충민원의 온라인국민 접수창구로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정확·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에 따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음.

민원유형	처리기간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14일 이내
고충민원(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7일 이내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2018. 7. 26.)에 따르면 민원처리 결과 및 답변은 부서장의 책임 하에 처리(부서장 결재[보고] 후 국민신문고 답변란에 입력·통보)하되 민원인이 ‘서신통보’를 요청한 경우 ‘대외 시행문’으로 작성·결재토록 하며, ‘서신’ 통보를 생략할 경우 ‘서신 미통보 사유입력’란에 상세내역을 입력토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도시건축과에서는 [현황1]과 같이 2020.08.26. 접수 민원 1건에 대해 지연하여 처리하였고, [현황2]와 같이 민원인이 서면통보를 요청한 민원 27건에 대해 부서장결재를 누락하거나 답변을 시행문으로 작성하지 않고 내부결재로 처리하는 등 민원 사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정보공개 처리 부적정

【현 황】

1. 처리 지연 내역[공개]

접수일	청구인	청구내용	처리기한	처리완료일	지연일	비고
19.02.14.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관련	19.02.27.	19.02.28.	1일	
19.10.29.	-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련	19.11.12.	19.11.13.	1일	
20.12.24.	-	20년 1월 이후 사용승인 된 다세대주택 현황	21.01.08.	21.01.11	1일	

2. 처리 지연 내역[부존재]

접수일	청구인	청구내용	처리기한	부존재결정시 처리기한	처리완료일	지연일	비고
19.07.10.	-	온천 수질검사 등 관련 자료	19.07.23.	19.07.18.	19.07.19.	1일	
19.11.04.	-	산림기술용역업체, 농림분야엔 지니어링 업체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19.11.15.	19.11.12.	19.11.13.	1일	
20.01.20.	-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관련	20.02.04.	20.01.30.	20.01.31.	1일	
20.05.07.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20.05.20.	20.05.15.	20.05.20.	3일	
20.07.23.	-	임대아파트 분양관련	20.08.05.	20.07.31.	20.08.05.	3일	
20.12.22.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현황	20.01.06.	20.12.31.	21.01.04.	1일	
21.06.2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현황	21.07.07.	21.07.02.	21.07.05.	1일	
21.09.03.	-	관내 보행자도로 전체 면적	21.09.13.	21.09.13.	21.09.15.	2일	

【위법부당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P.88)에 따르면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7일 이내 처리토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도시건축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정보공개결정 3건, 정보부존재 결정 8건에 대하여 규정상 명시된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지연처리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1,4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공요금 납부 소홀**

【현 황】

○ 공공요금 연체료 납부 내역

(단위:원)

연번	건명(고객번호)	지출일	납부금액	연체료	가산금	비고
합계			942,840	1,392	10	
1	계산리 205-90 (13 2467 9575)	19.01.30.	196,110	588	10	
2	계산리 205-90 (13 2467 9575)	19.04.04.	157,960	81		
3	동정로 92 (13 2468 0554)	19.12.09.	49,660	84		
4	영동군종합회관CCTV (13 2517 8006)	20.04.27.	3,710	36		
5	마을쉼터공원CCTV (13 2517 7980)	20.04.27.	4,140	41		
6	난계예술회관주차장 남쪽CCTV (13 2517 7999)	20.04.27.	2,960	27		
7	계산리 205-90 (13 2467 9575)	20.07.03.	138,710	165		
8	중앙로6길 38 (13 2648 4771)	21.02.19.	68,450	63		
9	영동초교정문 (13 2202 7426)	21.02.19.	27,970	21		
10	영동역 구내지하차도 (13 2415 1199)	21.02.19.	15,760	13		
11	눈어치1로 37-25 (13 2644 1504)	21.02.19.	29,060	63		
12	황간육교 (13 2497 4176)	21.02.19.	248,350	21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공공요금의 조회·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부서의 회계담당직원은 신규로 추가된 시설의 경우 개별고지납부를 지양하고 인터넷 빌링(Billing)을 신청하여 합산 청구토록 관리함이 바람직하며, 자동이체의 경우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출하여 계좌로 입금하여 자동이체 되도록 하고 있는바, 매월 청구되는 요금을 납부일까지 자동이체 공공요금 계좌로 입금 조치하여 연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지서 청구건에 대해서도 납기일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그럼에도, 도시건축과에서는 전기요금 납부대상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통해 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나, 적기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총12건의 고지 건에 대해서는 연체료 및 가산금 1,402원을 예산지출 처리하여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음.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예산지출 처리된 연체료 및 가산금 1,400원을 회수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1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근무지 내 국내출장여비 과오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실제 지급액(원)	적정 지급액(원)	과오 지급액(원)	부적정 사유
2019. 09.10.	□□6급 □□□□	2019. 08.07.	건축허가업무 추진	10,000	0	10,000	일비과다지급 (4시간 미만 관용차 사용)

【위법부당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 1항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도시건축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이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일비를 과다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과오지급된 출장여비 10,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29,61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업무 소홀

【현 황】

1.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산정 내역

근무일자	직급	성명	휴일	근무	출근	퇴근	수당	적정	비고
			구분	구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2020.05.31.	□□9급	□□□	휴일	현업	00:01	09:30	569	480	영동역 체온측정소 근무
2020.05.31.	□□6급	□□□	휴일	현업	00:06	09:30	564	480	영동역 체온측정소 근무

2. 시간외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시간, 원]

직급	성명	단가	실지급내역				적정지급내역				차액	비고
			기본	초과	합계	금액	기본	적정 초과	합계	금액		
합계			20	39	59	599,180	20	36	56	569,570	29,610	
□□9급	□□□	8,798	10	24	34	299,130	10	22	32	281,530	17,600	2020. 5월
□□6급	□□□	12,002	10	15	25	300,050	10	14	24	288,040	12,010	2020. 5월

【위법부당사항】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개인별, 초과근무일별 초과근무 사전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한 자는 근무종료 후 지문인식 등을 통해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행정과에서 시행한 영동군 시간외근무 관리·운영 계획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인정범위가 1일 4시간, 월57시간이며, 비상근무 시 일일 상한시간은 8시간, 월70시간 범위 내에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도시건축과에서는 [현황1]과 같이 □□9급 □□□ 외 1명에 대하여 적정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잘못 책정하였고, [현황2]와 같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29,6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과오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29,61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사용내역 공개 소홀

【현 황】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현황

지급일자	적요	집행액(원)	지급과목	해소과목
2020.12.11.	영동역 체온측정 근무 점심	12,000	부서운영	-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현황

연도	공개 세부내역	미공개 세부내역	비고
2018년	-	2018.10.~12.	1건 (방문객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2019년	2019.08.~12.	2019.02.~06.	5건 (벤치마킹 관련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외 4건)
2020년	2020.01.~12.	-	-
2021년	-	2021.01.~현재	2건 (군정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1건)

※ 영동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서 전체직원의 사기양양과 실·과·소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하는 경비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부서형태를 유지하는 기관의 보조운영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공통 경비에 한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하여 집행이 가능하나, 부서장의 활동경비나 소수의 일부직원을 위한 경비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그러나, 도시건축과에서는 통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경우에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현황1]과 같이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음.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소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용내역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확대 시행으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또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806(2020.2.25.)호와 관련하여 2020. 3. 3일 행정과에서 발송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개 확대 시행에 따른 정비 요청」 공문에 따르면,
- “2020년 3월 집행분부터 단체장, 과장급이상, 부서별, 지방의원, 소속기관장 등은 ‘목적, 대상, 금액, 방법, 장소, 사용일시, 대상 수(인원)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개” 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도시건축과는 [현황2]와 같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까지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공개되어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미공개 건에 대해 즉시 공개조치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현 황】

1. 법인카드 관리 현황

발급일자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용도	발급대장 등재여부	비고
		직	성명			
17.10.12.	5585-****-****-****	□□6급	□□□	지출	부	

2. 사용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연번	결제일	청구액	내용	인출일	인출액	차액	비고	
합계	합계					765		
1	19.10.14.	3,494,670	19년10월 대금	19.10.14.	3,225,080	331	561원	
				19.10.18.	269,921			
2	19.11.12.	1,672,900	19년11월 대금	19.11.12.	1,110,569	230		
				19.11.14.	562,561			
3	20.01.13.	3,394,920	20년01월 대금	20.01.13.	3,394,359	-561		1,2번 건 연체료 처리에 따른 잔액부족
4	20.01.28.	1,899,300	20년01월 대금	20.01.28.	1,462,300	175		
				20.01.30.	437,175			
5	20.07.13.	1,562,000	20년07월 대금	20.07.13.	1,410,000	59		
				20.07.17.	152,059			
6	20.12.14.	4,636,000	20년12월 대금	20.12.14.	3,340,000	531		
				20.12.15.	1,296,531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7]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고, 부서별로 발급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 까지 보고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 토록 되어 있음.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그럼에도, 도시건축과에서는 위 [현황1]과 같이 보유중인 법인카드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2021. 1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았고, [현황2]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지출처리 및 계좌관리를 소홀히하여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 카드 사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보유중인 법인카드에 대해 대장을 작성관리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현 황】

○ 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 현황

취득일	소재지	지적(m ²)	취득목적
19.11.06.	학산면 박계리 155-5	164	공공편익(마을안길) 도모
20.07.16.	심천면 용당리 179-3	123	공공편익(마을안길) 도모
20.11.10.	양강면 묵정리 38-11	165	공공편익(마을안길) 도모
20.11.10.	양강면 묵정리 39-11	82	공공편익(마을안길) 도모

【위법부당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49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함.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 이에, 세출취득한 재산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새울행정 공유재산시스템으로 연계되어 관리하고, 세출외 취득재산의 경우 직접 새울행정 공유재산 시스템에 취득등록을 하여 관리하여야 함.

- 그럼에도, 도시건축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토지(학산면 박계리 155-5 외 3건)에 대하여 취득등록을 누락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대장등재 누락된 재산에 대해 등재조치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4,113,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도급자	안전관리비 계약액	목적 외 청구액	목적 외 사용항목	비고
계(5건)				4,113,000		
2019 □□ □□□ □□□□□공사	소 계			297,000		회수
	19.10.18.~ 19.11.26.	(주)영동□□ 장□□	222,173	222,173	접근금지 표지판1, 라바콘16	
				75,737	제경비	
2019 □□□□ □□□□사업 (□□□)	소 계			306,000		회수
	19.12.31.~ 20.02.07.	(주)영동□□ 장□□	228,559	228,559	접근금지 표지판1, 라바콘20	
				77,441	제경비	
2020 □□□ □□□□사업 (□□□)	소 계			344,000		회수
	20.04.28.~ 20.06.25.	(주)□□전기 이□□	258,864	258,864	접근금지 표지판1, 라바콘23	
				85,136	제경비	
2020 □□□□ □□□ 확장공사	소 계			1,302,000		회수
	20.06.25.~ 20.10.21.	(주)□□건설 김□□	973,736	973,736	공사중 표지판12, 경광등외20	
				328,264	제경비	
2020 □□□ □□□□ 설치공사	소 계			1,864,000		회수
	20.04.17.~ 20.08.21.	□□건설(주) 김□□	1,987,703	1,467,703	PE드럼, 점멸등 제외	
				396,297	제경비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2천만원, 2020.7.1.부터)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 □□□(□□□ □) □□□□설치공사(2019)>의 4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상에 사용명목 중 ‘접근금지 표지판’, ‘라바콘’, ‘공사중 표지판’, ‘경광등(점멸등)’, ‘PE드럼’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 청구한 5건 합계 금액4,113,000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과다지급된 공사비 4,113,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현 황】

○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 약 일 (착공일) (준공일)	설계금액(천원)			비고
				총공사금액	도급액	관급액	
□□□(□□□□앞) 배수로정비공사	38,030	□□건설(주) 김□□	2021.06.21 (2021.06.25) (2021.08.23)	38,480	38,480	-	2021년도

【위법부당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2020. 7. 1. 시행)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기준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21 □□□(□□□□ 앞) 배수로정비공사>를 실시설계용역으로 설계예산서를 납품받아 추진하면서, 관련 제도나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여 원가계산 작성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도시건축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